

現行消防施設設置基準의 分析과 改善方案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Current Fire Protection Standard for Buildings)

鄭丙宰*
李環會**

ABSTRACT

Fire Protection System is facilities that Control the fire by mechanic means. Buildings Over a Certain Scale is required this system.

As the small from the fire extinguisher as the large to the sprinkler system of automatic fire extinguishing equipment the kinds are various. With the development of architecture technique while modern higer buildings are increased.

As fire is a first product that human make, it performed many profits and services for our mankind.

Sometimes as it is profitable fire or harmful fire, it takes charge of human's life culture. Therefore fire protection system is facilities that control the latter fire by mechanic means Building over a certain scale is required this system.

As the small from the fire extinguisher as the large to the sprinkler system of automatic fire extinguishing equipment, the kinds are various.

With the development of architecture technique while modern higher buildings are increased high level and fire prevent facilities aren't reached to that level.

The object of this study is present the problem which appear from the analysis of place standard for fire protection facility. This study described as a following order.

First, We are going to look history of the fire protection system and change course of that with the year and facility

Second, We say the frame system and special nature of the foreign fire prevent Act.

Third, We understand the control reality of fire protection system.

Fourth, We took out the merit of foreign fire prevent law and the problem of our current domestic system

*正會員：경기도청 방위교육 담당관
**理事：연세대 교수, 工博

The placing standard of proper fire protection facilities that be presented from this study are followed next

- 1) We have to reinforce sprinkler system placing standard for the fire extinguishing and check the spread of fire.
- 2) We must to be ruled the standard for keeping fire prevention system that are received reality and people's idea.
- 3) We should prepare lawful basis which can be place fire prevention center.
- 4) We have to correct the standard of use count about complex building without mainuse and we take increase the real effectiveness of this.
- 5) We ought to match the use of current fire prevention act and the use of architecture law.

I. 序論

1-1. 研究의 目的

消防의 目的是 火災를豫防警戒 또는 鎮壓하여 國民의 生命·身體 및 財產을 保護함으로써 公共의 安寧秩序維持와 福利增進에 寄與하는 것으로 消防法律에서 實言하고 있다.

이 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消防對象物 이라함은 山林·船舶(船舶安全法 第2條 第1項의 규정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는 船舶과 港內에 繫留된 船舶에 한한다) 船渠·車輛·建築物·其他의 工作物 또는 物件으로서 이中 消防施設의 設置義務가 부여된 特殊消防 對象物이라 부른다.

消防施設에는 크게 5가지의 機能으로 分류를 하고 있는데, 물·기타 소화약제로 불을 끄는 소화 설비와 불이난 位置를 알려주는 警報設備, 신속하게 地上으로 대피하기 위한 手段인 피난설비, 물을 저장하는 消火用水設備, 그리고 火災 진화시에 소방관이 使用하는 消火活動上 必要한 設備등으로 대별하고 있다.

消防法에서는 이러한 設備를 總稱해서 消防施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1958年 制定以來 消防施設의 設置義務가 규정된 同法 施行令을 11回에 걸쳐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高級化되어가는 建築物의 發展趨勢에 敏感하게 對應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며, 適材適所에 필요한 適應設備도 大型火災事故를 經驗하고나서 급기야 外國의 防災法令을 檢討·改善 補完하는 惡循環을 反復하고

있다.

本研究는 消防施設의 現況을 診斷, 研究分析하여 效用價值를 높이는 同時 法制化의 資料로 提示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1-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消防法令의 變遷過程을 通해 消防施設의 發展過程을 살펴보고 國內外의 防災關聯文獻을 比較研究함으로써 現行 消防法令이 안고있는 問題點을 導出하는데 主眼을 두었다.

制度의 으로 改善을 要하는 部分에 치중하였고, 難解한 事項에 대하여는 事例를 例證하였으며, 이를 基本으로 消防施設의 適定한 設置基準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II. 消防施設의 一般的 事項

2-1. 消防의 意義

消防이란 단순히 어의적으로 보면 화재를 예방하고 불난것을 끄는 일을 말한다.¹⁾ 이것을 締약적으로 표현하면 소방은 「火災警戒 및豫防」과 「火災防禦」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 개념으로 소방은 「불을 끈다」는 정도로 통용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렇듯 광범하고 龐大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즉 소방이란 「연소현상에 대한 기초지식의 토대위

1)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82, p. 2007

에서 각종 조사를 행하여 화재경계 및 防火방법을 案出, 실제 화재에서의 火災對抗手段과 防禦戰術의 연구, 그리고 연소방지」등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선 소방법 제1조의 규정중 「이법은 화재를 예방경계 또는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잘 명시되어 있다.

환언해서 소방의 眞意는 鎮火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世界思潮의 으로 볼때 예방경찰이 경찰제도의 주안이듯이 豫防消防이 중점이어야 할 것은 明若觀火 한 것이라 하겠다.²⁾

문화가 발달할 수록 火氣사용이 증가하는 한편 건축물의 밀집, 도시의 비대경향은 가일층 火災現象의 빈도를 높이고 있는데 그 예로 '79년도에 불과 1,711건이었던 화재가 10년 지난 '88년에는 그 배인 2,507건이 발생³⁾한것으로 보아 이러한 사실을 雄辯으로 입증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소방의 의의와 그 중대성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된다 하겠다.

2-2. 消防의 範圍와 對象

소방의 범위에 대하여 소방법 제1조의 목적에서 직접 정면으로 明示하고 있지 않으나 「화재를 防, 警戒, 鎮壓하여」라는 목적실현을 위한 예방에로부터 진압에 미친다는 것과 「國民의 生命, 身體, 財產을 그 灾害로부터 保護」한다는 직접 목적과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복리증진을 도모」한다는 간접목적에 의하여 권력적, 강제적 요소 수반하는 경찰적 행정과, 권력을 수반하지 않는 화의 향상, 생산의 부흥에 기여하는 복지행정의 면에 亘하고 있는 소방행정의 一端을 窺知할 있다.

이와 같이 소방목적은 광범하고도 직·간접적으로 국민개개인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의 복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고 나아가는 학가적인 이해와도 不可分의 관계가 있기

최근성, 「한국소방총람」, 삼성인쇄, 1972, p. 19
「88 화재통계연보」, 내무부, 1989, p. 5

때문에 자연히 소방의 범위와 대상이 넓혀지는 것은 당연하며 구체적인 대상을 넘어서서 抽象的인 대상에 까지 미치게 된다.

소방은 이러한 목적 달성과 災害라는 비상사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화재현장에 있어서는 물론, 평소의 예방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따라서 소방상에 있어서의 대상은 다양하지만 소방법상의 대상물은 山林·舟車·船渠·港內에 繫留된 선박·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이것을 용어해석상에 있어서 세분하면 산림이란 단순히 산악, 森林이 아니고 소방상 위험이 생길 우려있는 산림을 말하므로 산악·삼림은 물론 평야, 황무지도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방상에서 단순히 주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광범한 의미에서의 소방대상은 선박일절의 것도 대상이 된다. 그래서 소방법상으로는 총톤수 5톤 미만의 帆船·同漁船 및 平水區域만을 航行하는 범선 또는 艤로서 운행하는 배를 지칭하고 있는데 대하여 기타의 선박은 별도로 선박안전법에서 화재방지를 강화 규정하고 있다. 前記한 선박 이외의 선박이 소방법상 제외되게 된 것은 해상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청이 있고 선박안전법, 동법시행령 및 선박설비규정에 각각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船舶安全法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선박의 船渠가 부두에 계류되었을 때에는 소방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車」라 함은 차량을 말하고 차량이라 함은 차마, 자동차 軌道車 등을 말하며, 이러한 것이 入庫중이라도 그 대상이 된다. 역사한 소방대상중에서도 가장 광범하고 다양한 것은 건축물과 기타의 공작물일 것이다.⁴⁾

2-3. 消防施設의 歷史와 變遷過程

우리나라의 소방시설은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58년에 소방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된 이래

4) 최근성, 「한국소방총람」, 삼성인쇄, 1972, p. 20

長久의 발전을 거듭해 왔다.

소방시설의 규제는 일본과 같이 크게 용도별, 규모별로 나누어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消火器의 경우는 최초에 건평 660m²미만의 건물에 설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현재는 연면적 150m²이상으로 대폭 강화하였고 屋内消火栓설비는 오히려 일법당 시보다 완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건평 1,650 m²미만 또는 4층 이상의 건물에 모두 해당되던 것이 연면적 2,100m²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스프링클러등 자동소화설비는 1967년 개정시부터 현재까지 강화됨이 없이 같은 설치기준을 緊持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소방시설의 역사와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5), 6)}

표1. 소방시설별 설치 기준 변천내용

○소화기

연도별 장소별	'58. 7. 4	'67. 1. 15	'73. 12. 29	'81. 11. 6	'84. 6. 30 ~
제 1종 장소	건평 200평미만 (650 m ²)	연면적 150m ² 이상 (용적률은 33%)	기동	연면적 150m ² 이상 (용적률은 33%)	자동
제 2종 장소	"	연면적 300m ² 이상 (용적률은 33%, 높이 150 m ²)	자동	자동	자동
제 3종 장소	"	연면적 150m ² 이상	자동	자동	자동

※ 제1종 장소: 공연장, 시장, 호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로서 화재 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특수장소

※ 제2종 장소: 제1종 장소보다 화재위험성이 적은 학교, 교회, 사업장등의 특수장소

※ 제3종 장소: 창고, 차고, 주차장, 비행기 격납고

○옥내소화전 설비¹⁾

연도별 장소별	'58. 7. 4	'67. 1. 15	'73. 12. 29	'81. 11. 6	'84. 6. 30 ~
제 1종 장소	건평 500평미만 (4,650 m ²)	연면적 500m ² 이상 (용적률은 33%)	연면적 700m ² 이상 (용적률은 33%)	연면적 1,100m ² 이상 (용적률은 33%)	자동
제 2종 장소	"	연면적 700m ² 이상 (용적률은 33%, 높이 1,000 m ²)	"	"	자동
제 3종 장소	"	연면적 700m ² 이상	연면적 2,100m ²	자동	자동

5) 「소방법령연혁집」, 법제처

6) 「일본소방관계법령집」, 전국가제법령출판, 평성원년, p. 134~163

○스프링클러설비

연도별 장소별	'58. 7. 4	'67. 1. 15	'73. 12. 29	'81. 11. 6	'84. 6. 30 ~
제 1종 장소	4층이상건물	① 공연장: 700m ² 이상 ② 시장: 150m ² 이상 ③ 사무실: 400m ² 이상 ④ 1~10층: 400m ² 이상 ⑤ 11~20층: 500m ² 이상 ⑥ 21~30층: 1,000m ² 이상 ⑦ 31~40층: 1,500m ² 이상 ⑧ 41~50층: 2,000m ² 이상 ⑨ 51~60층: 2,500m ² 이상 ⑩ 61~70층: 3,000m ² 이상 ⑪ 71~80층: 3,500m ² 이상 ⑫ 81~90층: 4,000m ² 이상 ⑬ 91~100층: 4,500m ² 이상 ⑭ 101~110층: 5,000m ² 이상 ⑮ 111~120층: 5,500m ² 이상 ⑯ 121~130층: 6,000m ² 이상 ⑰ 131~140층: 6,500m ² 이상 ⑱ 141~150층: 7,000m ² 이상 ⑲ 151~160층: 7,500m ² 이상 ⑳ 161~170층: 8,000m ² 이상 ㉑ 171~180층: 8,500m ² 이상 ㉒ 181~190층: 9,000m ² 이상 ㉓ 191~200층: 9,500m ² 이상 ㉔ 201~210층: 10,000m ² 이상 ㉕ 211~220층: 10,500m ² 이상 ㉖ 221~230층: 11,000m ² 이상 ㉗ 231~240층: 11,500m ² 이상 ㉘ 241~250층: 12,000m ² 이상 ㉙ 251~260층: 12,500m ² 이상 ㉚ 261~270층: 13,000m ² 이상 ㉛ 271~280층: 13,500m ² 이상 ㉝ 281~290층: 14,000m ² 이상 ㉞ 291~300층: 14,500m ² 이상 ㉟ 301~310층: 15,000m ² 이상 ㉟ 311~320층: 15,500m ² 이상 ㉟ 321~330층: 16,000m ² 이상 ㉟ 331~340층: 16,500m ² 이상 ㉟ 341~350층: 17,000m ² 이상 ㉟ 351~360층: 17,500m ² 이상 ㉟ 361~370층: 18,000m ² 이상 ㉟ 371~380층: 18,500m ² 이상 ㉟ 381~390층: 19,000m ² 이상 ㉟ 391~400층: 19,500m ² 이상 ㉟ 401~410층: 20,000m ² 이상 ㉟ 411~420층: 20,500m ² 이상 ㉟ 421~430층: 21,000m ² 이상 ㉟ 431~440층: 21,500m ² 이상 ㉟ 441~450층: 22,000m ² 이상 ㉟ 451~460층: 22,500m ² 이상 ㉟ 461~470층: 23,000m ² 이상 ㉟ 471~480층: 23,500m ² 이상 ㉟ 481~490층: 24,000m ² 이상 ㉟ 491~500층: 24,500m ² 이상 ㉟ 501~510층: 25,000m ² 이상 ㉟ 511~520층: 25,500m ² 이상 ㉟ 521~530층: 26,000m ² 이상 ㉟ 531~540층: 26,500m ² 이상 ㉟ 541~550층: 27,000m ² 이상 ㉟ 551~560층: 27,500m ² 이상 ㉟ 561~570층: 28,000m ² 이상 ㉟ 571~580층: 28,500m ² 이상 ㉟ 581~590층: 29,000m ² 이상 ㉟ 591~600층: 29,500m ² 이상 ㉟ 601~610층: 30,000m ² 이상 ㉟ 611~620층: 30,500m ² 이상 ㉟ 621~630층: 31,000m ² 이상 ㉟ 631~640층: 31,500m ² 이상 ㉟ 641~650층: 32,000m ² 이상 ㉟ 651~660층: 32,500m ² 이상 ㉟ 661~670층: 33,000m ² 이상 ㉟ 671~680층: 33,500m ² 이상 ㉟ 681~690층: 34,000m ² 이상 ㉟ 691~700층: 34,500m ² 이상 ㉟ 701~710층: 35,000m ² 이상 ㉟ 711~720층: 35,500m ² 이상 ㉟ 721~730층: 36,000m ² 이상 ㉟ 731~740층: 36,500m ² 이상 ㉟ 741~750층: 37,000m ² 이상 ㉟ 751~760층: 37,500m ² 이상 ㉟ 761~770층: 38,000m ² 이상 ㉟ 771~780층: 38,500m ² 이상 ㉟ 781~790층: 39,000m ² 이상 ㉟ 791~800층: 39,500m ² 이상 ㉟ 801~810층: 40,000m ² 이상 ㉟ 811~820층: 40,500m ² 이상 ㉟ 821~830층: 41,000m ² 이상 ㉟ 831~840층: 41,500m ² 이상 ㉟ 841~850층: 42,000m ² 이상 ㉟ 851~860층: 42,500m ² 이상 ㉟ 861~870층: 43,000m ² 이상 ㉟ 871~880층: 43,500m ² 이상 ㉟ 881~890층: 44,000m ² 이상 ㉟ 891~900층: 44,500m ² 이상 ㉟ 901~910층: 45,000m ² 이상 ㉟ 911~920층: 45,500m ² 이상 ㉟ 921~930층: 46,000m ² 이상 ㉟ 931~940층: 46,500m ² 이상 ㉟ 941~950층: 47,000m ² 이상 ㉟ 951~960층: 47,500m ² 이상 ㉟ 961~970층: 48,000m ² 이상 ㉟ 971~980층: 48,500m ² 이상 ㉟ 981~990층: 49,000m ² 이상 ㉟ 991~1000층: 49,500m ² 이상 ㉟ 1001~1010층: 50,000m ² 이상 ㉟ 1011~1020층: 50,500m ² 이상 ㉟ 1021~1030층: 51,000m ² 이상 ㉟ 1031~1040층: 51,500m ² 이상 ㉟ 1041~1050층: 52,000m ² 이상 ㉟ 1051~1060층: 52,500m ² 이상 ㉟ 1061~1070층: 53,000m ² 이상 ㉟ 1071~1080층: 53,500m ² 이상 ㉟ 1081~1090층: 54,000m ² 이상 ㉟ 1091~1100층: 54,500m ² 이상 ㉟ 1101~1110층: 55,000m ² 이상 ㉟ 1111~1120층: 55,500m ² 이상 ㉟ 1121~1130층: 56,000m ² 이상 ㉟ 1131~1140층: 56,500m ² 이상 ㉟ 1141~1150층: 57,000m ² 이상 ㉟ 1151~1160층: 57,500m ² 이상 ㉟ 1161~1170층: 58,000m ² 이상 ㉟ 1171~1180층: 58,500m ² 이상 ㉟ 1181~1190층: 59,000m ² 이상 ㉟ 1191~1200층: 59,500m ² 이상 ㉟ 1201~1210층: 60,000m ² 이상 ㉟ 1211~1220층: 60,500m ² 이상 ㉟ 1221~1230층: 61,000m ² 이상 ㉟ 1231~1240층: 61,500m ² 이상 ㉟ 1241~1250층: 62,000m ² 이상 ㉟ 1251~1260층: 62,500m ² 이상 ㉟ 1261~1270층: 63,000m ² 이상 ㉟ 1271~1280층: 63,500m ² 이상 ㉟ 1281~1290층: 64,000m ² 이상 ㉟ 1291~1300층: 64,500m ² 이상 ㉟ 1301~1310층: 65,000m ² 이상 ㉟ 1311~1320층: 65,500m ² 이상 ㉟ 1321~1330층: 66,000m ² 이상 ㉟ 1331~1340층: 66,500m ² 이상 ㉟ 1341~1350층: 67,000m ² 이상 ㉟ 1351~1360층: 67,500m ² 이상 ㉟ 1361~1370층: 68,000m ² 이상 ㉟ 1371~1380층: 68,500m ² 이상 ㉟ 1381~1390층: 69,000m ² 이상 ㉟ 1391~1400층: 69,500m ² 이상 ㉟ 1401~1410층: 70,000m ² 이상 ㉟ 1411~1420층: 70,500m ² 이상 ㉟ 1421~1430층: 71,000m ² 이상 ㉟ 1431~1440층: 71,500m ² 이상 ㉟ 1441~1450층: 72,000m ² 이상 ㉟ 1451~1460층: 72,500m ² 이상 ㉟ 1461~1470층: 73,000m ² 이상 ㉟ 1471~1480층: 73,500m ² 이상 ㉟ 1481~1490층: 74,000m ² 이상 ㉟ 1491~1500층: 74,500m ² 이상 ㉟ 1501~1510층: 75,000m ² 이상 ㉟ 1511~1520층: 75,500m ² 이상 ㉟ 1521~1530층: 76,000m ² 이상 ㉟ 1531~1540층: 76,500m ² 이상 ㉟ 1541~1550층: 77,000m ² 이상 ㉟ 1551~1560층: 77,500m ² 이상 ㉟ 1561~1570층: 78,000m ² 이상 ㉟ 1571~1580층: 78,500m ² 이상 ㉟ 1581~1590층: 79,000m ² 이상 ㉟ 1591~1600층: 79,500m ² 이상 ㉟ 1601~1610층: 80,000m ² 이상 ㉟ 1611~1620층: 80,500m ² 이상 ㉟ 1621~1630층: 81,000m ² 이상 ㉟ 1631~1640층: 81,500m ² 이상 ㉟ 1641~1650층: 82,000m ² 이상 ㉟ 1651~1660층: 82,500m ² 이상 ㉟ 1661~1670층: 83,000m ² 이상 ㉟ 1671~1680층: 83,500m ² 이상 ㉟ 1681~1690층: 84,000m ² 이상 ㉟ 1691~1700층: 84,500m ² 이상 ㉟ 1701~1710층: 85,000m ² 이상 ㉟ 1711~1720층: 85,500m ² 이상 ㉟ 1721~1730층: 86,000m ² 이상 ㉟ 1731~1740층: 86,500m ² 이상 ㉟ 1741~1750층: 87,000m ² 이상 ㉟ 1751~1760층: 87,500m ² 이상 ㉟ 1761~1770층: 88,000m ² 이상 ㉟ 1771~1780층: 88,500m ² 이상 ㉟ 1781~1790층: 89,000m ² 이상 ㉟ 1791~1800층: 89,500m ² 이상 ㉟ 1801~1810층: 90,000m ² 이상 ㉟ 1811~1820층: 90,500m ² 이상 ㉟ 1821~1830층: 91,000m ² 이상 ㉟ 1831~1840층: 91,500m ² 이상 ㉟ 1841~1850층: 92,000m ² 이상 ㉟ 1851~1860층: 92,500m ² 이상 ㉟ 1861~1870층: 93,000m ² 이상 ㉟ 1871~1880층: 93,500m ² 이상 ㉟ 1881~1890층: 94,000m ² 이상 ㉟ 1891~1900층: 94,500m ² 이상 ㉟ 1901~1910층: 95,000m ² 이상 ㉟ 1911~1920층: 95,500m ² 이상 ㉟ 1921~1930층: 96,000m ² 이상 ㉟ 1931~1940층: 96,500m ² 이상 ㉟ 1941~1950층: 97,000m ² 이상 ㉟ 1951~1960층: 97,500m ² 이상 ㉟ 1961~1970층: 98,000m ² 이상 ㉟ 1971~1980층: 98,500m ² 이상 ㉟ 1981~1990층: 99,000m ² 이상 ㉟ 1991~2000층: 99,500m ² 이상 ㉟ 2001~2010층: 100,000m ² 이상 ㉟ 2011~2020층: 100,500m ² 이상 ㉟ 2021~2030층: 101,000m ² 이상 ㉟ 2031~2040층: 101,500m ² 이상 ㉟ 2041~2050층: 102,000m ² 이상 ㉟ 2051~2060층: 102,500m ² 이상 ㉟ 2061~2070층: 103,000m ² 이상 ㉟ 2071~2080층: 103,500m ² 이상 ㉟ 2081~2090층: 104,000m ² 이상 ㉟ 2091~2100층: 104,500m ² 이상 ㉟ 2101~2110층: 105,000m ² 이상 ㉟ 2111~2120층: 105,500m ² 이상 ㉟ 2121~2130층: 106,000m ² 이상 ㉟ 2131~2140층: 106,500m ² 이상 ㉟ 2141~2150층: 107,000m ² 이상 ㉟ 2151~2160층: 107,500m ² 이상 ㉟ 2161~2170층: 108,000m ² 이상 ㉟ 2171~2180층: 108,500m ² 이상 ㉟ 2181~2190층: 109,000m ² 이상 ㉟ 2191~2200층: 109,500m ² 이상 ㉟ 2201~2210층: 110,000m ² 이상 ㉟ 2211~2220층: 110,500m ² 이상 ㉟ 2221~2230층: 111,000m ² 이상 ㉟ 2231~2240층: 111,500m ² 이상 ㉟ 2241~2250층: 112,000m ² 이상 ㉟ 2251~2260층: 112,500m ² 이상 ㉟ 2261~2270층: 113,000m ² 이상 ㉟ 2271~2280층: 113,500m ² 이상 ㉟ 2281~2290층: 114,000m ² 이상 ㉟ 2291~2300층: 114,500m ² 이상 ㉟ 2301~2310층: 115,000m ² 이상 ㉟ 2311~2320층: 115,500m ² 이상 ㉟ 2321~2330층: 116,000m ² 이상 ㉟ 2331~2340층: 116,500m ² 이상 ㉟ 2341~2350층: 117,000m ² 이상 ㉟ 2351~2360층: 117,500m ² 이상 ㉟ 2361~2370층: 118,000m ² 이상 ㉟ 2371~2380층: 118,500m ² 이상 ㉟ 2381~2390층: 119,000m ² 이상 ㉟ 2391~2400층: 119,500m ² 이상 ㉟ 2401~2410층: 120,000m ² 이상 ㉟ 2411~2420층: 120,500m ² 이상 ㉟ 2421~2430층: 121,000m ² 이상 ㉟ 2431~2440층: 121,500m ² 이상 ㉟ 2441~2450층: 122,000m ² 이상 ㉟ 2451~2460층: 122,500m ² 이상 ㉟ 2461~2470층: 123,000m ² 이상 ㉟ 2471~2480층: 123,500m ² 이상 ㉟ 2481~2490층: 124,000m ² 이상 ㉟ 2491~2500층: 124,500m ² 이상 ㉟ 2501~2510층: 125,000m ² 이상 ㉟ 2511~2520층: 125,500m ² 이상 ㉟ 2521~2530층: 126,000m ² 이상 ㉟ 2531~2540층: 126,500m ² 이상 ㉟ 2541~2550층: 127,000m ² 이상 ㉟ 2551~2560층: 127,500m ² 이상 ㉟ 2561~2570층: 128,000m ² 이상 ㉟ 2571~2580층: 128,500m ² 이상 ㉟ 2581~2590층: 129,000m ² 이상 ㉟ 2591~2600층: 129,500m ² 이상 ㉟ 2601~2610층: 130,000m ² 이상 ㉟ 2611~2620층: 130,500m ² 이상 ㉟			

○피난가구

2-4. 消防施設의 種類와 設置基準

소방시설은 건축물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早期感知, 警報, 通報, 초기진화, 피난등 자체소방
활동에 사용하거나 소방관서의 소방대가 소방작전
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부지에 설치
한 시설로서 현행 소방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소방시설은 消火設備, 警報設備, 避難設備, 消火用
水設備, 기타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등으로 구분
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대상물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건축물, 공작물 기타 시설물등으로서 화재발생시 소화작업, 화재경보, 피난등에 긴요하게 사용되는 防災設備인데 모든 건축물, 공작물 또는 기타 시설물등에 설치하게 된다. 그러나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외에 그 설치자에게 부담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모든 건축물, 공작물, 기타 시설물등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強要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대상물의 화재위험도와 화재시에 예상되는 피해정도등을 감안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그에 적절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소방법령에서는 화재위험도가 높고 화재시 私益은 물론 公益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의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그외의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그 설치여부를 自律에 맡기고 있다.⁷⁾

7) 고재모, 「소방시설적용해설」, 청림사, 1989, p. 4

소방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特殊場所(특수건축물)의 관계자는 동법시행령(제13조 내지 제24조)과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 제조소등 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제2조 내지 제144조 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기타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를 설치유지 하도록 하고 있다.(소방법 29조 1항)

1) 消火設備

소화설비는 화재시 소화를 주기능으로 하는 설비이다. 이는 火點에 불 또는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 및 연소방지를 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여기에는 수동식과 자동식이 있는데 그 설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령제13조 제1항)

(1) 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

- 가) 물양동이 및 소화수통
 - 나) 건조사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다) 기타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 (2) 옥내 소화전설비
 - (3) 스프링클러설비
 - (4)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CO₂소화설비, 할로겐화물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 (5) 옥외소화전설비
 - (6) 동력소방 Pump 설비

2) 賦報設備

경보설비는 화재의 감지, 경보 및 통보기능을 가진 설비이다.

이는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 또는 열을 감지하여 화재를 알리는 경보설비와 화재발생 상황을 消防官署에 통보하는 速度設備등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령 제13조 제2항)

- (1) 자동화재탐지설비
 - (2) 전기화재경보기
 - (3) 자동화재속도설비
 - (4) 비상경보설비(비상벨, 자동식싸이렌, 방송설비)

3) 避難設備

피난설비는 火災建築物(2층 이상)에 收容되어 있는 인원이 안전장소로 대피하는데 사용되는 설비이다. 이는 화재시 피난계단 및 비상용 습강기등으

로 피난하지 못한 사람들이 직접 사용하는 기구와 피난에 보조적 기능을 가진 설비가 있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령제13조제3항)

- (1) 피난기구(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등)
- (2) 유도등 및 유도표지
- (3) 비상조명등
- (4) 방열복, 공기호흡기등 인명구조장구

4) 消火用水設備

소화용수설비는 화재발생시 自衛消防隊 또는 소방관서의 소방대가 火災鎮壓用水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화용수를 저장하는 설비로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령제13조 제1항).

- (1) 소화수조, 저수지, 기타소화용수설비
- (2) 상수도 소화용수시설

5) 消火活動上 必要한 設備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는 화재발생시 자위소방대 또는 소방관서의 소방대가 소화작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화작전활동에 보조 기능을 갖는 제반 설비이다. 이는 발화건축물내의 연기배출, 발화건축물내의 조명 및 비상전원의 사용, 발화건축물내와 옥외간의 通信疏通補助, 高層 및 地層에 放水機能의 일부를 담당하는 설비 등으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령제13조제5항)

- (1) 배연설비
- (2) 연결송수관설비
- (3) 연결살수설비

2-5. 消防施設의 設置實態와 維持管理

'89.12.31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特殊消防對象物(소방법규상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물)은 총 220,765개소(285,119개동)로 집계분석되고 있다.

'지난 8년간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년평균 10,306개소의 소방대상물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미비 소방대상물은 년평균 3,091개소가 감소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방시설은 이동식 소방기구인 소화기로부터

표3. 소방대상물의 원·미비 현황⁸⁾

연도	구분	총 대상	원 대	미 대	비 비율
1981		129,664	107,713	21,951	16.9
1982		130,073	125,378	4,695	3.6
1983		135,891	133,057	2,834	2.1
1984		151,869	149,563	2,306	1.5
1985		163,992	162,892	1,100	0.7
1986		177,899	177,089	810	0.5
1987		189,770	185,567	4,203	2.2
1988		201,806	198,792	3,014	1.4

고정식 소화설비까지 총 504,336개의 설비가 220,765개소의 특수소방대 상물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 소화기는 220,765개소의 전대상에 모두 설치되어 있다.⁹⁾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방관서에서는 년1회이상 이들 대상에 대한 定期消防検査를 실시하는 한편, 異狀氣象 및 火災特別警戒時에는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경우 지적을 받은 대상처는 관할소방관서로부터 최고 30일간(防火施設은 60일)의 시정보완 명령을 발부 받는데¹⁰⁾ 기간내에 不備施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¹¹⁾

표4. 연도별 소방시설 설치위한 현황

연도	'82	'83	'84	'85	'86	'87	'88
2,467 대	120	580	691	306	360	212	198

III. 外國의 消防施設基準

3-1. 概要

世界 주요 國家 都市의 現制度는 나라, 都市에 따라 그 歷史, 文化, 习惯, 風土 等에 따라 千差萬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을 가진 세계 각국의 防火關係法令도 法體系, 法源의 狀

8) 「한국 소방행정사」, 내무부, 1989, p. 208

9)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내무부, 1989, p. 105

10)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내무부, 1988, p. 9

11)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한국법령편찬회, 7~2권, p. 1024~7

況, 規定내지는 規制의 범위 強弱等의 面에서 볼 때 큰 差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事實을 먼저 충분히 이해하고 세계각국 또는 都市의 防火制度를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法學上의 分類로서는 유럽 大陸諸國의 소위 「大陸法系」와 英國이나 美國의 소위 「英美法系」의 두 가지로 大別할 수 있다.¹²⁾ 이 두 法系를 比較하여 보면 大陸法系는 成文法主義를 취하는데 反하여 英美法系에서는 判例法主義를 取하는 特徵을 보게 된다.

大陸法系를 取하는 국가로서 프랑스法系를 取하는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풀투갈, 中南美諸國과 獨逸法系를 取하는 獨逸, 스위스, 오스트리아, 日本, 우리나라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나라에서의 法은 모두 議會에서 制定된 成文法 즉 憲法, 法律, 條例의 型式을 취하고 이러한 成文法에 根據命令, 規則의 形式을 갖도록 되어 있다.

이에 反하여 英美法系를 취하는 나라 예를 들면 英國, 美國, 카나다, 오스트리아, 뉴우질랜드 등의 나라는 傳統的으로 判例法이 重視되어 있기 때문에 具體的인 事案에 관계되는 判例가 곧 法이다.

여러가지 社會相에 관계되는 判例가 쌓여 나라 또는 地方社會를 다스리는 法體系를 이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英美法系를 취하는 나라도 現在에도 議會가 제정하는 成文法이 있고 高度로 발달하는 夏雜한 현대국가의 기구, 지방자치제의 조직이나 二道에 관한 法이나 實體法은 오히려 判例法이라기보다는 의회가 制定하는 성문법으로 다스려지고 있다.

防火制度, 組織, 權限, 國民 또는 住民의 義務等에 대해서는 大陸法系나 英美法系를 莫論하고 成文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世界 여러나라의 行政法을 볼 때 주의할 점은 聯邦國家에서는 연방을 구성하는 州나 國內法上으로는 나의 國家의 性格을 가지고 廣範圍한 통치권을 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全國을 統一的, 一的으로 보는 것이 그릇된 것이다.

예를 들면 美國은 각주가 각각 하나의 國家의

性格을 가지고 있어 주에 따라 行政法, 民法, 刑事法과 여러분야에서 서로 다른 制度法制를 볼 수 있다. 또한 地方自治가 철저한 美國은 州의 規制事項을 될 수 있는 한 적게 하여 具體的인 법제는 각都市에서大幅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州에서도都市에 따라 法制가 달라지는 경우도 발견된다. 防火制度나 實體에 있어서도 都市에 따라 그 內容은 같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防火關係法이 전국통일로 규제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根本的으로 다른 점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양상은 美國뿐만 아니고 聯邦國家인 英國, 西獨等에서도 같다. 다만 中央集權의 인가地方分權의 인가에 따라 이를 각국간에 法制機構나 實體가 다르게 된다.

우리나라의豫防消防行政은 行政官廳別로 法令이 體系化된데 반하여, 英, 美에서는 規制對象別로 法令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消防法에 防火에 관한 사항이 있고 建築法에는 一部만 있다.

특히 英國은 극장, 숙박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학교, 공장등 防火對象物의 用途에 따라 法令이 있어 이들 各法令을 모두 합쳐야 전체를 把握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行政部處로 法令이 체계적으로 整備되어 있으나 英, 美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英, 美에서는 建築行政官이 예컨대 工場에 대한 行政을 執行할 때에는 간단히 工場法令을 보기만하면 되기 때문에 便利한 面도 있다.

3-2. 美國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美國은 聯邦政府가 防火制度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적다.

聯邦政府가 行하는 防火는 聯邦政府에 屬하는施設에 대한 防火에 한하고 있다.¹³⁾

1) 法律(Act and Law)

美國은 연방국가이고 연방은 연방(합중국)헌법에 열거된 權限만을 州로부터 移讓받고 있는 國家이

13) 방화재료 및 방내화구조의 성능기준연구, 건설부국립건설연구소, 1981, p. 14

다. 그러므로 연방과 각주가 각각의 행정부(大統領, 州知事)立法部(連邦議會, 州議會) 및 司法部(連邦裁判所, 州裁判所)를 가지고 있어 形式上으로는 聯邦과 각주와는 각각 別個의 法域을 가지고 있어 연방법과 각주法이 並存하는 法의 二元性을 가지고 있다.

美國은 英國과 같이 전통적으로 判例法主義를 취하고 있어 成文法은 當初, 이러한 무수히 쌓인 判例法, 傷習法을 補完하기 위하여 制定한 것으로 현재는 複雜한 社會에 對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成文法으로 規制하게 되었다. 이러한 成文法은 한번 그것이 有效하게 公示, 施行되면 항상 判例法에 우선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현재는 判例法이 不合理한 경우나 混亂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社會現狀 또는 社會不安에 對應하는 새로운 成文法을 制定하는 方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民事法, 刑事法에는 判例法이 남아 있지만 行政法에는 모두 成文法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美國의 州는 그 자체가 하나의 국가이며 통치권 모두를 保有하고 있다. 그러므로 州의 代表를 맡은 州에서 「知事」라고 부르는 사실이라든가 각주를 합쳐 연방국가로서의 「合衆國」이라고 하는 이유에서 볼 때 美國의 州를 우리나라의 道, 郡, 邑等과同一視한다면 근본적으로 틀리게 된다.

우리나라의 道는 어디까지나 單一國家로서 道의 區域內에 대한 支配權을 주는 地方自治團體의 하나인데 反하여 美國의 州는 그 自體가 本來 保有의 통치권을 가지는 하나의 국가이다. 다만 美國의 州는 國內의 으로는 그 州의 영역안에 대한 國가적統治權을 가지며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많은 州가 한데 뭉쳐 一定한 조건(연방헌법)으로 연방을 結成한 것이므로 대외적으로는 다른 州와의 관계에서도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國家로서의 性格은 表面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政治, 經濟, 軍事上에도 國際的으로는 연방국가로서의 合衆國이 表面에 나타나는 것이다.

美國을 보는데 以上의 실체를 充分히 認識하는 것이 중요하다. 防火에 대한 權限으로서 聯邦政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聯邦法에 規制되고 있는

사항은 연방정부에 속하는 시설, 예를 들면 군대 및 國防에 關聯한 시설안의 強化, 一般的으로 州와 州사이 國際的인 運輸施設, 船舶, 鐵道, 航空機에 관한 防火行政, 기타 聯邦政府의 계약물품을 製造하는 施設等에 관계되는 防火에 한정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建築法, 同施行令, 同施行規則, 同告示와 같은 自治團體가 施行하는 防火行政을 全國統一的으로 규제하는 法律은 全無하다.

그러므로 強力한 權限을 가진 州法이라는 것은 州議會가 制定한 法으로서 우리나라의 道에서 제정하는 規制와는 本質的으로 性格이 다른 것이다. 美國의 州는 그 자체가 하나의 國家性格이기 때문에 美國의 聯邦法, 州法, 自治團體條例의 規制範圍 우선순위등의 關係와 우리나라의 法律, 대통령령(施行令), 條例와 對比할 수 없다.

美國의 州法, 市郡條例에서 法律이나 條例라는 용어는 우리法體系로 볼 때 명확한 統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法律을 Law 또는 Act라고도 하고 市郡議會에서 제정하는 것도 Law라고 하는 한편, Code, Ordinance, Regulation이라고도 하여 우리가 一般的으로 알고 있는 Law(法律)라고 하는 해석에 混亂을 가져온다.

州의 法律 또는 규칙으로서 널리 活用되고 있는 것은 NFPA¹⁴⁾基準이 있다.

2) 條例(municipal code)

美國의 地方自治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市(Municipal)이며 市議會에서 제정한 法은 前述한 바와 같이 Law, Act, Code, Ordinance等 名稱에 관계없이 市條例로 된다.

防火에 관한 條例에는 建築關係, 消防(火災豫防) 관계가 있는데 建築條例에 대해서는 消防用設備, 피난설비 등은 消防局에서 執行한다.

美國에서 條例의 執行을 알아보는데 주의할 것은 條例를 制定하는 市의 區域內에는 州法을 적용하지 않고 오직 條例만 適用한다는 점이다.

一般的으로 都市에서 볼 수 있는 建築條例(Building code)의 规定사항을 보면 대략 다음과

14)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미국방화협회, 1896년 설립)

같으며 이중에서 ③, ⑧, ⑫의 각 일부 ⑯, ⑰들은 肖防에서 집행하고 其他는 建築局, 電氣局, 衛生局, 警察局 等이 각각 擔當하고 있는것이一般的인 實情이다.

- ① 建築檢事官의 權限과 責務
- ② 業種別 建物 分類
- ③ 防火의 設定
- ④ 높이 및 面積의 制限
- ⑤ 建築物의 形式, 構造 및 用途에 관한 規制
- ⑥ 劇場, 부두, 차고 等에 쓰이는 建築物에 대한 特別한 規制
- ⑦ 採光 및 換氣에 관한 規制
- ⑧ 非常口의 規制
- ⑨ 建築材料, 建築物의 荷重 및 應力基準
- ⑩ 構造規制
- ⑪ 建築工事中의 保安規制
- ⑫ 建築材料 構造材의 保護, 防火壁, 區劃 階段 및 샤프트의 遮斷, 지붕材의 및 지붕 피복재 等에 대한 耐火性, 防火性 規制
- ⑬ 굴뚝 및 暖房器具
- ⑭ 에레베이터
- ⑮ 配管工事
- ⑯ 電氣施設
- ⑰ 가스配管 및 가스 器具
- ⑱ 看板 및 揭示板
- ⑲ 消防設備

一般的으로 市의 建築行政은 市의 建築局을 中心으로 움직이는데 建築計劃의 全部를 審查하지 않고, 消防局, 電氣局, 水道局, 衫生局, 警察局 等이 각關係되는 사항을 審查하여 이를 각분담 사항이 모두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만 그 建築計劃을 許可하게 되므로 우리나라 처럼 消防에서의 建築同意權은 없다.

3) 獨自基準(Codes and Standards of Other Organizations)

(1) NFPA 準則(Code of NFPA)

美國防火協會(NFPA)는 防火에 관한 여러가지 準則을 만들어 간행하고 있다. 이準則은 어디까지 民間企業이 작성한것이기 때문에 권고적인 성격

인것이지만 美國內의 建築, 防火 기타 여러分野의 권위자를 망라 조직한 準則起草委員會가 作成한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는 아주높이 평가되어 美國은勿論 國제적으로 널리 採用되고 있다. 또한 各事業的, 建築關係者등에게 업무상의 지도서로서 利用되고 있는 외에 保險契約 및 廉價租賃의 기초자료로서 保險關係者에게도 利用되어 널리 防火指針으로 쓰이고 있다.

NFPA의 準則制定委員會가 制定한 準則은 火災豫防의 各 分野를 망라 190名以上이 되며 이는 NFPA가 發行하고 있는 National Fire Code로 總16卷으로 되어 있다.

NFPA가 작성한 準則으로 연방 각주의 法律이나 각자치단체의 條例의 準則으로 가장 널리 活用되고 있는 것은 미국전기준칙, 人命 安全準則, 引火性 및 可燃性液體準則, LPG貯藏取扱基準, 石油연소설비 設置基準, 引火性液體移動탱크규제기준, 폭발물 및 火薬製造, 輸送, 貯藏 및 사용에 관한 準則等이 있다. 以外에 폭죽안전법 準則이나 로켓사용준칙 등이 있으며 美國防火準則과 같이 美國內 各州에서 널리 採用되고 있다.

NFPA가 정하는 多數의 準則은 美合衆國基準協會에 提出되어 美國聯邦基準으로 承認되어 있다.

前述한 美國防火準則을 制定하는 制定委員會員은 建築 防火에 관한 각분야의 권위자가 망라되어 있어 NFPA는 準則 제정에 있어 그 適用을 받는個人이나 단체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최대로 努力하고 있다. NFPA는 準則起草委員會가 準則 原案改正案을 작성하면 總會에 회부하는데 그에앞서 이를 印刷하여 關係會員, 關係業界에 배포하고 기술기관지에 發表하고 있다. 이렇게하여 많은會員이나 一般國民의 의견을 얻을 기회를 만들고 있다. 총회에서 정식으로 審議可決되면 NFPA 準則으로 刊行되는데 총회는 一般國民에게로 널리 公開되므로 이단계에서도 널리 個人的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2) 其他的 防火關係基準(Other codes and Standards) 美國保險協會(AIA), 美國建築檢查官協會(BOCA)는 각각 火災豫防準則을 정하고 있는

데 NFPA가 制定하지 않는 防火基準을 정하고 있다. 保險研究所(UL)가 檢定하고 있는 各種製品의 구조 및 性能基準은 美合衆國基準協會에 의하여 美國聯邦基準으로 採用되고 있다. 工場相互機關(Factory Mutual=FM)도 工場의 모든 施設設備의 防火基準을 制定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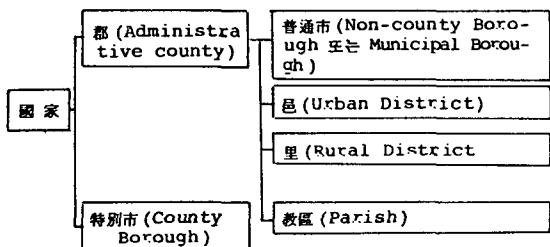
3-3. 英國

英國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리고 北아일랜드의 4地方으로 나누어져 있고 地方行政制度도 이를 각地方에 따라 多少의 차이가 있다. 이는 이들各地方이 각각 別個의 王國으로 由來한 歷史的인 현상으로서 聯合王國(United Kingdom)으로 통합된 현재에도 잉글랜드와 웨일즈 사이에는 큰 差가 없지만 이들地方과 스코틀랜드사이에는 常用語나 制度上으로도 큰 差가 있다. 地方自治法도 잉글랜드, 웨일즈地方에 적용하는 것과의 두 가지로 되어 있다. 그러나 地方行政區域의 廣域化, 地方行政制度의 統一化, 地方分權化로의 강한 움직임으로 이들 差異는 점점 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1) 잉글랜드 地方과 웨일즈 地方(England and Wales)

이 두 地方의 代表的 行政單位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5. 영국지방의 행정단위 체계 1 (잉글랜드, 웨일즈)



英國에서 郡이라는 用語는 두개의 意味로 쓰인다. 그 하나는 전통적인 地名으로서 이같은 郡이 잉글랜드에 40, 웨일즈에 12, 스코틀랜드에 33, 北아일랜드에 6개소가 각각 있다. 또 다른 하나의 意味는 地方行政單位로서의 郡으로 윗그림에서 Administrative County 行政郡이다.

양자중 行政군쪽이 약간 수가 많다.

행정군은 보통시와 읍과 리로 나누어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구로 있다. 특별시(County Brough)는 인구 7만5천인 이상의 도시에 주어지는 行政구의 호칭으로 군과는 독립하여 군과 동격의 대우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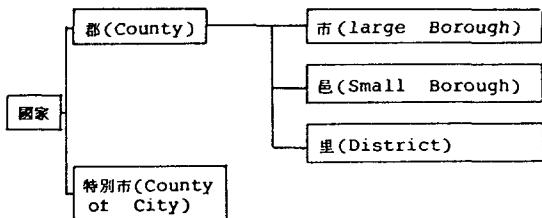
영국에서의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이며 行政집행 기관이다. 각 行政사무 구분마다 상임위원회가 行政 집행의 책임을 지게된다. 시장은 있어도 行政집행의 책임은 없고 군(읍, 리)의회를 주재하는 외에는 군을 의례적으로 대표할 뿐이다.

2) 스코틀랜드 지방(Scotland)

스코틀랜드 지방은 잉글랜드나 웨일즈 지방에서 적용되는 지방자치법과는 다른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행정을 전개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글로스고, 에든버러, 댄디, 에버딘의 4개의 특별시외에 33개소의 군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들 군에는 보통시가 24, 읍이 173, 리가 863개소가 있다.

표6. 영국의 지방의 行政 단위체계 2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지방자체제도는 잉글랜드나 웨일즈와 다른 것은 관습이나 용어상의 차이로,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잉글랜드나 웨일즈의 경우와 같이 의회는 입법기관이며 行政기관이다. 또한 군의회, 특별시의회, 읍·리의회의 行政사무 구분도 거의 같다.

3) 防火關係法(Act and Law)

방화관계법은 주로 화재예방면에서 화재시에 피난방법등에 관하여 각각 건물의 용도에 따라 개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공장에 대하여는 「工場法」(Factories Act)이 있어 공장의 설치와 관련되는 허가, 화재의 안전조

치, 화재예방, 소화활동, 화재통보설비, 공장감독의 권한등 세부사항이 규제되어 있다.

그외에 국장 홀(hall), 음식점, 점포, 창고, 학교등에 대하여는 「公衆保健法」(Public Health Act), 주류등을 제공하는 클럽(Club), 음식점등에 대하여는 「營業許可法」(Licensing Act), 사무소 및 점포등에 대하여는 「事務所, 店舗 및 鐵道施設法」(Offices, Shops and Railway Premises Act)이 제정되어 있고 이중에서 각각의 방화대상물에 관련되는 항목에 관한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防火委員會은 1961년 「공장법」의 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공장에서 피난방법에 대한 확인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다. 같은 의무가 사무소, 점포등에서도 「사무소, 점포 및 철도시설법」에 의하여 정하고 있다.

또한 연립주택과 같은 개인주택의 경우 화재시 피난방법 등에 관계되는 규제는 아니지만, 가옥의 일부를 숙소 또는 2세대 이상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대상물로서 관리가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규칙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는 「주택법」(Housing Act)이 제정되어 있는데 특히 숙박시설, 양호시설, 오락시설, 사교장, 교육시설에 대하여 화재시 인명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 또는 특별시의 방화위원회에서 火災安全認證書를 필요로 하고 있는 「火災豫防法」(Fire precautions Act)이 제정되어 있다.

3-4. 캐나다

방화관계법령은 우리 나라의 「소방법」과 같이 국적으로 적용되는 소방관계법은 엄밀한 의미에서 防火에 관한 규제는 지방별로 상이한 「건축」에 주로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 뉴파운들란드주별로 건축법이 있다. 그리고 각州別相異한 건축법 및 각종기술기준으로 인하여 민생활에 미치는 불편이 크기 때문에 이를統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2007년 온타리오주내의 경우 28종의 Building Code 있었다. 그리고 뉴파운들란드주내에는 48종의 방호스커플링(coupling)이 사용되고 있어 화재시

소방지원에 커다란 혼란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혼란때문에 건축법 등 안전관계법 및 각종 기술기준을 가능한 한 통일하기 위하여 1970년 Act of Parliament에 의하여 「캐나다기준위원회」를 구성하였다.¹⁵⁾ 방화관련규정이 전반적으로 언급된 캐나다의 건축법(National Building Code)은 1941년에 공포되어 그간 수차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법령은 國立研究機關인 National Research Council에 의하여 공포되었는데 캐나다의 국내행정은 지방행정부가 強力히 시행하므로 이 법령은 하나의 標準이 되는 것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건축법령이公布되면 전국에 통일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地方政府는 별도의 수준높은 법령이 없는 이상 NBC를 적용하는 것이 건축행정수행상 편리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점차 이 법규가 自治的으로 전국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으나 국민들이 우선은 건축법령 적용으로 불편을 느낀다고 생각하면 적용은 保留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캐나다도 미국과 같이 NBC는 聯邦政府와 관련된 건축물에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지방행정권한에 속하는 건축물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기구에 일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점에서 우리나라의 건축법과는 행정상 많은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점을 감안하여 NBC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NBC에서 防火에 관한 부분은 총 9part중에서 제3part에 집중수록되어 있다. NBC와 연관된 우리나라의 소방법과 유사한 NFC(National Fire Code)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건축법과 소방법이 각기 건설부, 내무부와 같이 권원이 분리되었는데 반하여 캐나다는 합동위원회(Associate Committee)에서 NBC, NFC가共同制定되는 관계로 두 법규가 同質性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NBC를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NFC 이외의 여러 관련법규가 적용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다고 말할 수 있다.¹⁶⁾

15) 「방재설비 핸드북」, 한국화재보험협회, 1982년, 1권, p. 71

16) 「건축물의 내진구조 및 방재기준에 관한 연구」, 건설부, 제3권, p. 41~192.

〈다음號에 계속〉